◉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258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3.1.3., 일부개정, 법률 제19178호)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적격투자기관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추가(안 제2조의3)

나. 법률 개정에 따라 조문 분리(안 제11조의3에서 제11조의6)

종전 제11조의3을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 등(제11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제11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11조의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제11조의6)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을 성격에 따라 분리 규정(안 제11조의3 제1항)

라. 주식매수선택권 시가평가방법의 명확화(안 제11조의3 제2항)

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안 제11조의3 제4항)

1) 종전 주식매수선택권은 시행령에 열거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어 벤처기업의 활용도가 제한되었음

2) 외부 전문가 기준에 경력 및 학력 요건을 신설하여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해 더 많은 외부 전문성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이동 및 신고 절차 규정 등(안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전자우편 : nnnnn@korea.kr
- 팩스 : 044-204-7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전화 (044) 204 - 7706, 7708, fax (044) 204-7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1조의3의 제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을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을 “신주를 발행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時價)”를 “평가한 주식의 시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설정 등에 필요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

후 6개월”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로 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1.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 등을 갖춘 자
4.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⑤ 법 제16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여야 함을 말한다.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13까지를 각각 제11조의7부터 제11조의16까지로 하고,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또는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

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이 퇴임일 또는 퇴직일인 경우 벤처기업은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5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벤처기업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용역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①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벤처기업의 정관
2. 주주총회 의사록
3. 이사회 의사록(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②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또는 철회 신고를 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3제3항을

준용하여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 (생 략)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4. (생 략)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1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 등) ①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1. ---------- 신주를 발행하여 ----------
<신 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3. ----------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時價)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 평가한 주식의 시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설정 등에 필요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로 한다.
1.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이하 이 조에서 “부여 당시 시가”라 한다)	
나. 해당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2.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2.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삭 제>
<신 설>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1.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 등을 갖춘 자 4.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⑤ 법 제16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여야 함을 말한다.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5.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7.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8.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9.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10.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11.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12.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 13.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⑥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2.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삭 제>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삭 제>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	<삭 제>	

는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	<삭 제>
<신 설>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또는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이 퇴임일 또는 퇴직일

		인 경우 벤처기업은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5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벤처기업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1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①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벤처기업의 정관 2. 주주총회 의사록 3. 이사회 의사록(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

	는 신고서 ②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또는 철회 신고를 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3제3항을 준용하여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4 ~ 제11조의13 (생 략)	제11조의7 ~ 제11조의16 (현행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13까지와 같음)